

食品衛生管理의 現況과 對策 (上)

— 畜産加工食品의 衛生管理를 中心으로 —

申光淳*

1. 食品衛生의 概要

飲食物이란 우리들의 生活에 없어서는 안되는 基本要素로서 飲食物은 恒時 完全無欠한 狀態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飲食物로 因한 危害를 防止하여 健康의 維持와 增進을 圖謀하기 위한 原理를 研究하는 科學과 이를 實地에 應用하는 技術이 “食品衛生學”이라 할 수 있으며 公衆保健學의 重要한 한 分野로서 food sanitation, food control(美國), food hygiene(英國), food health(最近)라 한다.

WHO의 環境衛生專門委員會에서는 1955년에 食品衛生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Food hygiene” means all measures necessary for ensuring the safety, wholesomeness and soundness of food at all stages its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until its final consumption.

即 “食品衛生”이란 食品의 成長發育(栽培), 生産, 製造로부터 最終的인 消費(採取)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課程에 걸친 食品의 安全性, 健全性 그리고 完全無欠性을 確保 維持하기 위한 必要한 모든 手段을 말한다라고 定義함으로써 食品衛生學의 內容과 範圍를 가장 잘 表現하였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課程이란 上記 定義에 나타난 各種 食品材料인 農産食品, 畜産食品, 水産食品 등의 成長發育, 栽培 또는

飼育(生育)하는 등의 生産(例: 家畜環境衛生)段階에서부터 이들 農, 畜, 水産物을 採取하는 段階 또는 이들을 利用한 製造, 加工段階는 勿論 調理, 貯藏, 保管, 運搬, 陳列하는 등의 段階를 거쳐 우리 人間이 採取 消費하는 段階의 全課程을 包含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定義는 飲食物의 衛生的인 管理에만 그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營養的, 嗜好的 그리고 價值的인 面에서의 健全성과 完全無欠性을 強調하고 있다 하겠으며 더우기 生産에서부터 消費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段階와 課程마다 이러한 狀態가 維持確保될 境遇 비로소 食品衛生의 궁극적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2. 食品管理 現況

1) 食品管理法規

일제시의 總독부령이나 해방후의 軍정법령 등이 정리되어 1962년 1월 20일 처음으로 食品衛生法으로 제정 공포되었다.

酒類飲料를 다루는 酒稅法(1949. 10. 21), 水産物 管理를 다루는 水産業法(1953. 9. 9), 일반식품관리 및 식품전반에 걸친 위생문제를 다루는 食品衛生法(1962. 1. 20), 우유와 식육관리를 다루는 畜産物加工處理法(1962. 1. 20), 水産物 檢査法(1962. 5. 10), 농산물 관리를 다루는 農産物 檢査法(1962. 12. 24) 등의 법령이 각각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서울대학교 獸醫科大學

食品衛生法는 식품 등의 관리범위,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금지사항, 표시관계, 검사, 허가등 영업관계, 감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을 모든 음식물(의약품 제외)로 하고있어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배제규정이 없는 한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乳製品과 食肉製品, 水産物을 원료로 한 병, 통조림, 集乳, 乳處理業 및 수산물에 관한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과 수산업법 등의 운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상에 관한 한계선이 문제가 되어 있다.

2) 食品行政

우리나라의 식품행정은 中央의 보건사회부, 농수산부와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保健社會部 : 보건사회부 藥務食品局내의 食品衛生課에서 식품행정을 주관하고 있고, 국립보건원의 위생부에서 관련 연구를 하며 또한 검정업무를 겸하고 있다.

지방조직으로는 市와 各道 保健社會局내에 保健 또는 衛生課가 있으며, 各市, 區, 郡, 衛生課, 係에서 각종 식품행정과 위생업무를 擔當하고 있으며 各市道마다 保健研究所가 있어서 檢査 및 調查研究業務를 擔當하고 있다.

나. 農水産部 : 농수산식품의 위생 및 품질, 관리는 농수산부산하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즉 농수산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主務는 畜産局의 加工利用課, 酪農課와 家畜衛生課의 衛生係에서 각각 擔當하고 있다. 乳加工, 肉加工의 許可管理는 各各 酪農課와 加工利用課의 加工係또한 이들의 衛生문제는 家畜衛生課의 衛生係에서 분담하며 전문적 기술지원은 農村振興廳산하의 家畜衛生研究所에서 맡고 있다.

海産物과 水産加工品の 제조 및 품질관리는 水産廳의 製造課와 中央水産檢査所에서 하고 있다.

또한 農水産物檢査所에서는 官需用 農産物과 輸入 농산물의 流通을 위한 품질의 등급만을 擔當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 농산물의 화학적·생

물학적 安全性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各市·道産業局의 糧政課, 畜産課, 水産課가 있고 家畜衛生試驗所, 水産物檢査所, 農産物檢査所가 있다.

다. 其 他 :

○國稅廳 : 國稅廳 酒稅課에서 酒稅와 免許, 製造관리를 擔當하며 國稅廳 技術研究에서 酒類의 分析檢定을 하고 있다.

○專賣廳 : 人蔘 및 人蔘製品規制에 關한 法律에 의하여 人蔘을 포함한 제품은 모두 人蔘製品課에서 製造許可와 모든 管理를 擔當하고 있다. 技術的인 面은 煙草人蔘研究所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工業振興廳 : 化纖課에서 國內 商品의 規格化 즉 KS規格中 食品의 規格을 다루고 있다.

3) 許可制度

現在 食品과 添加物 등 營業種類는 모두 49個 業種으로 區分되며, 食品 및 添加物製造, 加工業種이 27個, 接客業種이 7個 其他 運搬 및 販賣業種이 15個로서 行政機關의 許可와 管理業務도 專門性을 要하게 되었다.

그중 7個業種은 保社部長官이 11個業種은 市·道知事가 나머지 31個業種은 市長, 郡守, 區廳長이 許可管理케 하고 있다.

製造品目마다 許可를 받아야 할 對象은 製造加工業中에서 20鍾이 해당된다. 즉 아이스크림類(冰菓包含), 절임食品類, 菓子類(빵類包含), 加工乳, 마아가린 및 쇼트닝油, 食用油脂(압착油제외), 어육연제품, 통조림 및 병조림, 茶類, 清涼飲料(乳酸菌飲料포함), 添加物, 醬類, 食醋, 營養食品, 麵類, 糖類, 인스턴트食品, 調味料, 乾胞類等으로서 一定한 容器에 넣거나 포장單位가 뚜렷한 것은 모두 品目許可를 받게 하고 있다.

이 品目許可制度는 1967年 食品衛生法이 改定되었을때 新設된 것으로 우리나라만의 固有한 것이다.

施設基準은 業種別 施設基準으로 區分되어 있고, 面積, 製造施設名, 作業室名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設定하고 있다. 面積의 경우 상당한 넓

이(乳製品제조업, 集乳業, 乳處理業 등)로부터 660m² 이상(설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定해져 있다.

畜産物加工處理法에서는 畜産食品의 許可對象業種을 乳處理場과 畜産物加工場으로 區分하고 있다. 添加物을 사용하는 畜産物은 品目마다 許可를 받게 되어 있다. 畜産加工食品의 許可는 食品衛生法에 의한 許可와 畜産物加工處理法에 의한 許可로 二重許可를 받게 되어 있으나 現實은 畜産物加工處理法에 의한 許可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앞으로 食品衛生法에 의하여 管理되는 方向으로 關係法이 改正된다고 한다.

水産食品中 水産製造業으로서 水産物통조림, 魚肝油, 寒天, 冷凍業 등은 水産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밖의 것 즉 魚肉소오시지, 魚粉製造業 등은 道知事에게 申告하게 되어 있다. 施設基準은 食品衛生法에 의하게 되어 있다. 水産物통조림製造業과 冷凍業은 食品衛生法에서 共同部令事項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魚肉加工食品은 食品衛生法上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酒類는 酒種別로 製造場마다 酒稅法에 의해 免許를 받아야 한다. 酒類는 食品衛生法上 許可對象에서 排除規定이 明文化되어 있다.

人蔘製劑는 人蔘 및 人蔘製品規制에 關한 法律에 의해 食品衛生法の 許可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다.

4) 監視制度

法上許可를 받아야 할 營業뿐만 아니라 自由業種에 이르기까지 모두 食品衛生에 關한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監督廳은 保社部長官과 市道知事로 되어 있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食品衛生監視員이 있다. 감시원의 직무는 施設基準의 適否監視와 食品의 規格基準適否를 가리기 위한 取去檢査가 主軸을 이루고 있다. 허위표시, 과대광고와 표시기준 위반 여부,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감습의 이행여부, 食品衛生管理人 등의 勤務狀態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판매 또는 사용금지된 食品의 취급여부, 행정처분 이행여부,

식품 등의 압류,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違法事項의 團束 등이 감시직무에 속한다.

엿류, 절임식품류, 식초, 면류, 건포류, 보존음료수, 식용얼음판매업, 集乳業, 冷凍冷藏業, 食肉等 포장지위생처리업 등은 臨檢回數 年1回, 其他는 年2回, 食品自動販賣機營業은 年4회로 되어 있다.

畜産食品은 畜産物加工處理法에 의거, 農産통조림 등은 農産物檢査法에 의거, 水産製造業은 水産廳에서 監督하며, 酒類는 國稅行政에서, 人蔘製品은 專賣行政分野에서 監督하고 있다.

그 食品을 許可한 관청이 生産管理의 監督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流通過程의 衛生監視는 食品衛生法에 의하게 되어 있다.

5) 品質管理制度

農, 畜, 水産食品은 國家檢査制度가 있어 事前 品質管理를 하고 있는 셈이다.

市中에 流通되는 食品을 食品衛生監視員이 取去하여 檢査機關에서 그 品質을 調査檢査하고 判定結果에 따라 措置하는 것이 事後 品質管理制度이다. 우리나라 保健行政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1973年 自家品質管理制度가 新設되어 營業者가 原料管理, 製造管理, 其他 品質管理上 必要한 事項을 遵守해야 한다고 規定되었다. 1978年 保社部告示 14號로서 自家品質基準 및 規格에 關한 規定이 정해졌다.

그 對象은 주로 添加物과 茶類, 營養等 食品, 인스턴트食品等 8종이 되고 있다.

食品衛生管理人制度는 食品을 衛生的으로 관리하기 위해 27個 業種에 두게 되어 있다.

品質管理를 위해 規格基準이 定해진 것은 食品 87種과 添加物 326種이다.

施設基準에서 必要한 檢査施設과 檢査室을 갖추어야 할 業種을 7個業種으로 規定하고 있다.

食品接客業所中 大衆飲食店(탕반, 분식은 제외), 專門飲食店 및 遊興飲食店(飲食을 판매하는 경우) 등 3個業種에 대해서는 調理士를 두게

되어 있다.

3. 諸外國의 食品管理現況

1) 美 國

美聯邦政府의 食品關係 管理機構를 볼것 같으면 農務省 (Department of Agriculture) 과 保健福祉省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0년 5월4일자로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서 Department of Education이 분리 독립됨)이 관계 부처라 할수 있다.

먼저 農務省機構중에서 관련분야를 볼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Food and Consumer Services (食品 및 消費者保護分野)

Food Safety and Quality Service (食品安全性 및 品質管理局), Meat and Poultry Inspection Service (食肉 및 鷄肉檢查部), Commodity Services (商品管理部), Fruit and Vegetable Quality Division (果實 및 野菜品質課), Meat Quality Division (食肉品質課), Poultry and Dairy Quality Division (家畜 및 酪農品質課), Food and Nutrition Service (食品 및 營養管理局), Family Nutrition Programs (家庭營養部), Special Nutrition Programs (特殊營養部).

Marketing Services (市場管理分野)

Agriculture Marketing Service (農產市場管理局),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動植物 保健檢查局), 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 (聯邦穀類檢查局).

Economics, Policy Analysis and Budget (經濟, 政策分析 및 予算管理分野)

Economics, Statistics and Cooperative Service (經濟, 統計 및 協力局).

Conservation, Research and Education (保存, 研究 및 教育分野)

Science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科學

및 教育管理局), Federal Research Program (聯邦研究計劃),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協同研究計劃), Extension Program (普及 擴張計劃), Human Nutrition Center (人間營養 센터), Competitive Grants Office (關連事項 管理所), Integrated Pest Management Program (綜合病虫害 管理計劃),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國立農業圖書館).

또한 農務省에서 取扱하고 있는 食品關係 法規들은 다음과 같다.

United States Grain Standards Act (聯邦穀類標準化法), United States Warehouse Act (聯邦倉庫管理法), Perishable Agriculture Commodities Act, 1930 (變質農產物法),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46 (農產市場法), Animal Welfare Act (動物福祉法), Federal Meat Inspection Act (聯邦食肉檢查法),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家禽產物檢查法), Egg Products Inspection Act (卵產物檢查法).

다음은 保健 및 福祉省 機構중에서 관련분야를 볼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Public Health Service (公衆保健分野)

〈傘下機關〉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Surgeon General (保健担当次官補), Center for Disease Control (疾病管理센터),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食品, 藥品管理庁), Alcohol, Drug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알코올, 亂用藥品 및 精神保健管理庁),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國立保健院), Health Resources Administration (保健資源管理庁),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保健管理庁), Public Health Service Regional Office (公衆保健管理 地域事務所).

〈直屬機構〉

Beareau of Foods (食品局)

“ “ Drugs (藥品局)

“ “ Veterinary Medicine (獸医局)

“ “ Radiological Health (放射線保健局)

- “ “ Biologics (生物局)
- “ “ Medical Devices (醫療政策局)

National Center for Toxicological Research (國立毒研究센터), Executive Director of Regional Operations (地域管理行政官).

以上の保健關係機構중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원래 FDA는 1906년 발족후 1927년까지는 農務省의 化學局소관 (Food, Drug and Insecticide Administration)으로 있다가 1931년에 現在의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 強化되었다. 그후 所管部署도 바뀌어 1940년에는 農務省에서 聯邦安保部 (Federal Security Agency)로 소속되었다가 다시 1953년에는 保健教育厚生省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으로 소관이 변경되었으며, 다시 1980년 機構改編으로 保健 및 福祉省으로 귀속되었다.

1980년 現在 FDA의 총 종사원수는 7,500명을 넘고 있으며, 予算만도 324,248千弗에 달하며 全國을 10個地域으로 区分하여 총 21個地域에 事業支廳을 두고 있는 世界的인 機關이다. 또한 FDA의 機構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國際間

題事務局 (International Affairs), 地方連絡官 (Field Liason Officer), 政策管理官 (Policy Management), 法規事務局 (Legislative and Governmental Service), 教育局 (Bureau of Education and Voluntary Compliance), 등과 아래와 같은 食品·藥品關係機構를 갖고 있다.

이 밖에도 科學, 教育情報, 企劃評價, 行政, 地方 등 5個分野에 담당行政官 (Assistant Commission)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리고 食品藥品管理庁과 관련된 食品關係法規들은 다음과 같다.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聯邦食品, 藥品, 化粧品法),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公正包裝 및 標示法), Import Milk Act (輸入乳法), Tea Importation Act (茶類輸入法), Public Health Service Act (公衆保健管理法), Federal Meat Inspection Act (聯邦食肉檢査法),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家禽産物檢査法), Egg Products Inspection Act (卵産物檢査法), Saccharin Study and Labeling Act (싸카린 調査 및 標示法) Freedom of Information Act (情報管理法), Advisory committee Act (자문위원회법)

食品藥品管理廳

